

#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2-58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## 1. 제안이유

농외소득원 개발과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이용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군 농업인의 농외소득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이용 요건 완화 기준 신설(안 제10조)

- 1) 요건: 가공하려는 주산물이 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일 것
- 2) 절차: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정
- 3) 완화 사유: 농외소득원 개발과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

라. 기타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2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22. 6. 15.~7. 5.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##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2호 중 “산물(이하 “농산물”이라 한다)일 것. 다만, 부원료는 다른 지역 산물일 경우에도 가능하다.”를 “농산물일 것. 다만, 농외소득원 개발과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가공시설의 이용) ① 가공시설을 이용(변경을 포함한다)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가공시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 이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군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둔 농업인등일 것</li> <li>2. 가공하려는 주원료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활동으로 군에서 생산한 <u>산물</u> (이하 “농산물”이라 한다)일 것. 다만, <u>부원료는 다른 지역 산물일 경우에도 가능하다.</u></li> <li>3.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식품 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사람일 것</li> </ol> <p>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용제한 여부 등 판단 결정 후에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기간,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.</p>	<p>제10조(가공시설의 이용) ① 가공시설을 이용(변경을 포함한다)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가공시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 이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군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둔 농업인등일 것</li> <li>2. 가공하려는 주원료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활동으로 군에서 생산한 <u>농산물일 것. 다만, 농외소득원 개발과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.</u></li> <li>3.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식품 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사람일 것</li> </ol> <p>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용제한 여부 등 판단 결정 후에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기간,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.</p>